KOSHA GUIDE

A - G - 9 - 2025

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

2025. 3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기술지원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·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규정임

기술지원규정의 개요

○ 작성자 :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김태구 교수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

- 제·개정 경과
 - 2014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- 2024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전문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 등)
 - 2025년 1월 표준제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 등)
- 관련 규격 및 자료
 - HSE, Warehousing and storage (INDG412(leaflet), 2007)
 - HSE, Warehousing and storage(A Guide to health and safety)(HSG76, 2007)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(작업장의 청결)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(중량물을 인력(人力)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)
- 기술지원규정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원규정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기술지원규정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규정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5년 3월 26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<u>목 차</u>

1.	목 적1
2.	적용범위1
3.	용어의 정의1
4.	창고 작업 관련 법적 필수사항1
5.	창고 작업 시 유해·위험요인3
6.	작업 종류별 안전대책4
7.	적재 작업 시 주의 사항9

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

1. 목적

이 규정은 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규정은 차량 출입과 지게차 및 인력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창고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픽토그램(Pictogram)"란 그림을 뜻하는 픽토(Picto)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 (Telegram)의 합성어이다. 사물·시설·행위·개념 등을 상징적 그림문자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.
 - (나) "고소작업(Work at height)"이란 지상 위 또는 아래를 포함하는,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. (예: 작업 장비에서 떨어질 수 있는 장소(발판 사다리 등), 안전난간 없는 가장자리 또는 개구부 등)
- (2)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창고 작업 관련 법적 필수사항

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으로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4.1 창고작업 시 미끄러짐 및 넘어짐 재해 예방 대책

안전보건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
- 제3조(전도의 방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주는 제품, 자재, 부재(部材)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4조(작업장의 청결)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・관리하여야 하며, 폐기물 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.
- 제5조(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)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,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(不浸透性) 재료로 칠하고 배수(排水)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4.2 창고작업 시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

안전보건규칙 제663조(중량물의 제한) 등에 따라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과도한 무게로 인해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업방법 개선 및 보조도구를 활용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.

- 제663조(중량물의 제한)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·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.
- 제664조(작업 시간과 휴식시간 등의 배분)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・취급빈도・운반거리・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.
- 제665조(중량의 표시 등)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 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.
 - 1.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
 - 2.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,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
- 제666조(작업자세 등)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.
- 4.3 창고작업 시 추락 재해 예방 대책

안전보건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 및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.

- 1. 상부 난간대, 중간 난간대,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. 다만, 중간 난간대,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2.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(이하 "바닥면등"이라 한다)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 상 지점에 설치하고,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 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,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. 다만,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- 3.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. 다만,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 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 외한다.
- 4.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
- 5.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
- 6. 난간대는 지름 2.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
- 7.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

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.

1.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

4.4 창고작업 시 부딪힘 재해 예방 대책

안전보건규칙 제172조(접촉의 방지) 등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72조(접촉의 방지)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한다.

5. 창고 작업 시 유해·위험요인

(1) 물류창고와 저장고에서의 유해·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.

- (가)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
- (나) 중량물을 인력으로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위험
- (다) 고소 작업 시 떨어질 위험
- (라) 물류창고 내부 혹은 주변 이동 시 이동 중인 차량과 부딪힐 위험
- (마) 이동 중에 떨어지는 물체 및 적재된 물체가 떨어져 맞을 위험

6. 작업 종류별 안전대책

- 6.1 미끄러짐과 걸려 넘어짐에 관한 주의사항
 - (1) 작업장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.
 - (2) 적합한 바닥재/표면재를 사용한다. 경사로에는 미끄럼방지 표면재를 사용한다.
 - (3) 바닥, 계단 및 보행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.
 - (4) 미끄러운 장소에 미끄럼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.
 - (5) 안전화를 선정할 때에는 적재물의 특성, 기상조건과 오염물질의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. (모든 안전화가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지 않으므로 구매 전 적정 수준의 미끄럼 방지 기능 여부를 확인한다.)
 - (6) 오염물질이 묻은 통로나 보행로를 피한다.
 - (7) 충분한 조명을 설치한다.
- 6.2 중량물을 인력으로 작업 시 주의 사항
 - (1)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중량물 인력작업에 대해 작업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- (가) 업무: 부적절한 신체 움직임이나 자세(예시: 비틀기), 과도하게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거리(예시: 바닥에서 허리높이 이상), 과도하게 밀거나 당기는 거리, 몸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중량물을 잡거나 조작하는 상황, 반복취급 등
- (나) 물건의 무게: 수작업으로 취급하기에 과도한 무게, 과도한 부피, 미끄러운 재질, 날카롭거나 불안정한 경우 등
- (다) 작업환경 : 수작업에 비좁은 작업공간, 좁은 통로, 극한의 온도(고온, 저온), 가파른 경사 등
- (라) 개인의 역량: 임산부나 산모, 지병, 과거 근골격계 질환 부상자 등
- (2) 평가결과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있는 중량물 인력 취급작업 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(예시: 작업 또는 작업 체계 재구성, 선반 높이 또는 창고 레이아웃 변경, 기계식 조작 장치 등)
- (3) 작업자들에게 옮기는 물체의 무게와 무게 중심이 바로 잡히지 않았을 때 의 부적절한 자세 등에서 오는 근골격계 질환 발생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해 알려주고, 중량물 취급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 전 안전한 인력 작업과 인력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 장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
6.3 고소 작업 시 주의 사항

- (1) 모든 고소 작업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안전한 방법으로 계획하고, 적절히 감독되어야 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.
- (2) 고소 작업은 가능한 피하고, 불가피할 경우 적합한 장비를 작업에 사용해야 한다.
- (3) 지게차의 팔레트를 사 용하여 근로자가 고소 작업을 하거나(근로자의 이동을 포함), 지게차 위의 팔레트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- (4) 장비에 접근할 수 있게 특별히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단을 임의로 올라가지 않는다.

- (5) 고소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- (6) 고소 작업대와 같은 경우처럼 몇몇 장비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.
- (7) 사다리와 같이 고소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가 안전한지 점검해야 한다.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(가) 일반적인 외관 상태
 - (나) 다리, 레일, 플랫폼 및 계단이 손상되지 않았는지
 - (다) 조인트, 경첩이 손상되지 않았는지
 - (라) 핸드레일이 부착된 경우 핸드레일이 손상되지 않았는지
 - (마) 바퀴 및 브레이크가 부착된 경우 상태가 양호한지
 - (바) 사다리가 찌그러지거나, 뒤틀리지 않았는지
 - (사) 발판이 모두 부착되어있고, 상태가 양호한지
 - (아) 발판/디딤대가 깨긋한지
- (8) 점검결과 결함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결함 있는 장비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.
- (9) 떨어짐 사고를 합리적으로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어려운 경우, 추가적인 교육과 지침 또는 떨어짐 위험이 있는 곳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실현가능한 별도의 예방조치를 해야한다.
- 6.4 창고 내외의 차량 운행 시 주의 사항
 - (1) 운송업과 상품수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교환하여

KOSHA GUIDE A - G - 9 - 2025

야 한다.

- (2) 방문자 차량은 그들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.
- (3) 한국어를 거의 사용 못 하거나 매우 제한된 단어 수준을 이해를 하는 방문자의 경우, 해당 외국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규칙이나 픽토그램으로 이루어진 규칙을 제공하는 등 소통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.
- (4) 보행자들과 차량이 안전하게 교통할 수 있어야 한다. 작업장의 통행로들은 사용하는 사람들과 차량에 적합하게 배치되어야 한다. 차량과 보행자가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로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. 차량과 보행자의 완벽한 분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고,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통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.
- (5) 통행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되어야 한다.
- (가) 차량의 이용 여부
- (나) 후진의 최소화
- (다) 급커브와 사각지대 최소화
- (라) 웅덩이가 생기지 않게 유지·보수
- (마) 적재화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예) 가파른 언덕
- (6) 물류창고는 일방통행 등을 이용하여 후진차량에 의해 발생할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.
- (7) 후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진 방향으로 보행자들의 접근을 통제해야하고,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(8) 트레일러가 연결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트랙터와 세미 트레일러에 각각 사이드 브레이크로 제동을 걸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, 세미 트레일러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제동을 걸었는지 확인해야 한다.
- (9)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적재 상태를 확인하고, 출발 지시 없이 임의로나 고의로 출발

KOSHA GUIDE A - G - 9 - 2025

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. 이러한 안전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여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6.5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관한 주의사항

- (1)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사람들이 상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2) 물류창고 내에 물질이나 물체가 작업자에게 떨어질 만한 장소나 특정한 작업이 있다면, 이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관계자외의 출입을 제한해야한다.

6.6 산업용 트럭 작업 시 주의 사항

- (1) 산업용 트럭 등과 같은 기계적 조작 장비 및 작동 장비는 작업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적절히 유지·보수되어야 한다.
- (2) 산업용 트럭 운전자는 관리자에 의해 교육받아야 한다. 운전자 교육은 다음 세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.
 - (가) 기본교육
 - (나) 특정 직업교육
 - (다) 작업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
- (3) 지게차 등과 같은 산업용 트럭은 제작자의 조언에 따라 규칙적으로 유지·보수되어야 한다.
- (4) 마스트, 체인, 운반 부분, 포크와 같은 산업용 트럭의 리프팅 부분은 관리자에 의해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. 이때 다음 사항을 갖춰야 한다.
 - (가) 교대조 점검 문서
 - (나) 결점 발견 시 보고 및 시행된 수리에 대한 보고 체계
 - (다) 주기적인 보수 일정 계획

(라) 각 산업용 트럭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체계

7. 적재 작업 시 주의 사항

- (1) 적재 지역은 적절히 설계되고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. 저장고와 적재지역의 설계도 에는 급 코너, 불필요하게 위치한 문이나 기둥, 울퉁불퉁한 바닥이나 일정하지 않은 경사도의 변화는 설계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.
- (2) 팔레트들이 사용가능한 상태인지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 손상된 팔레트는 수리나 폐기를 위해 따로 분류되어야 한다. 빈 팔레트는 조심해서 다루도록 한다.
- (3) 팔레트들은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재되어야 한다. 밴딩, 수축, 스트래치 랩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적재를 할 수 있다.
- (4) 팔레트들을 물류창고에 쌓아두는 경우에 쌓는 모양에 팔레트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.
- (5) 적재 시스템은 적절히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하는데, 이는 창고에 저장된 상품들을 안전하게 적재하는 것을 포함한다. 지게차나 다른 차량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6) 적재용 팔레트들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적절히 수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. 검사 시에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.
- (가) 손상이나 결함의 즉각적 보고
- (나) 주기적인 육안 검사
- (다) 관리자에 의한 주기적이고 전문적인 검사
- (7) 적재 시스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손상을 발견했다면, 쌓은 것을 내리고 복구 작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기술지원규정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5. 2. 3. 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○ 개정사유 :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 등 신설 조항 등을 반영 ○ 주요 개정내용 - (5. 창고 작업 시 유해·위험요인) 인력 작업을 중량물 인력 작업으로 안전보건규 칙 신설조항 문구 반영 - (6. 작업 종류별 안전대책) 인력 작업을 중량물 인력 작업으로 수정 및 상해를 근골격계질환으로 수정 등 □ 재공표 : 2025. 3. 26. ○ 기술지원규정 영문 명칭(KSH-GUIDANCE→KOSHA GUIDE)으로 재공표